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195호)

예비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2. 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12. 18	
다. 상 정 일 자 : 2009. 12. 21	산업건설위원회 상 정
라. 의 결 일 자 : 2009. 12. 22	산업건설위원회 원안의결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9.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314,285,112	311,466,883	2,818,229	0.90
일 반 회 계	293,759,828	292,410,051	1,349,777	0.46
특 별 회 계	20,525,284	19,056,832	1,468,452	7.71
기 타 특 별 회 계	20,525,284	19,056,832	1,468,452	7.71
상 수 도 사 업	6,318,923	6,318,923	0	0.00
하 수 도 사 업	2,084,165	2,084,165	0	0.00
의료 급여 사업	592,118	606,945	△14,827	△2.44
기초생활보장사업	1,586,977	1,597,494	△10,517	△0.66
농공단지조성사업	1,117,452	1,113,553	3,899	0.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41,462	1,741,462	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366,840	404,218	△37,378	△9.25
주 차 장	895,584	899,269	△3,685	△0.41
수 질 개 선	121,412	121,412	0	0.00
기 반 시 설	1,108,797	1,108,797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766,797	1,766,797	0	0.00
농어촌발전기금운용	2,824,757	1,293,797	1,530,960	118.33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93,759,828	100.00	292,410,051	100.00	1,349,777	
세 입	지 방 세	16,047,000	5.46	16,047,000	5.49	0
	세 외 수입	45,047,848	15.33	43,232,808	14.78	1,815,040
	경상적세외수입	9,200,677	3.13	9,098,335	3.11	102,342
	임시적세외수입	35,847,171	12.20	34,134,473	11.67	1,712,698
	지 방 교 부 세	117,548,898	40.02	117,194,048	40.08	354,85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00,000	2.11	6,000,000	2.05	200,000
	보 조 금	108,916,082	37.08	109,936,195	37.60	△1,020,113
	국고보조금등	77,293,643	26.31	79,134,728	27.06	△1,841,085
	도비 보조금	31,622,439	10.76	30,801,467	10.53	820,972

○ 세 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93,759,828	100.00	292,410,051	100.00	1,349,777	
세 출	일반공공행정	12,593,370	4.29	13,341,171	4.54	△747,801
	공공질서 및 안전	2,226,382	0.76	2,248,847	0.77	△22,465
	교 육	2,089,440	0.71	2,193,753	0.75	△104,313
	문화 및 관광	32,482,499	11.06	33,253,962	11.32	△771,463
	환 경 보 호	31,286,643	10.65	30,869,350	10.51	417,293
	사 회 복 지	44,437,857	15.13	47,219,568	16.07	△2,781,711
	보 건	3,812,941	1.30	3,849,935	1.31	△36,994
	농림해양수산	64,493,490	21.95	60,798,625	20.70	3,694,865
	산업·중소기업	4,318,321	1.47	3,528,248	1.20	790,073
	수송 및 교통	19,552,567	6.66	17,824,175	6.07	1,728,392
	국토 및 지역개발	35,204,517	11.98	34,914,229	11.89	290,228
	예 비 비	3,006,980	1.02	3,108,956	1.06	△101,976
	기 타	38,254,821	13.02	39,259,232	13.36	△1,004,411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0,525,284	100.00	19,056,832	100.00	1,468,452	
세	세 외 수 입	18,925,209	92.20	17,441,757	91.52	1,483,452
	경상적세외수입	3,157,013	15.38	3,155,799	16.56	1,214
	임시적세외수입	15,768,196	76.82	14,285,958	74.97	1,482,238
입	보 조 금	1,600,075	7.80	1,615,075	8.48	△15,000
	국고보조금	1,554,781	7.57	1,566,781	8.22	△12,000
	도비보조금	45,294	0.22	48,294	0.25	△3,000

○ 세 출(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9. 예산안	구성비 (%)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액	
합 계	20,525,284	100.00	19,056,832	100.00	1,468,452	
세	환 경 보 호	8,406,837	40.96	8,406,837	44.11	0
	사 회 복 지	2,153,641	10.49	2,178,985	11.43	△25,344
	농림해양수산	2,824,757	13.76	1,293,797	6.79	1,530,960
	산업·중소기업	1,484,292	7.23	1,517,771	7.96	△33,479
	수송 및 교통	895,584	4.36	899,269	4.72	△3,685
출	국토 및 지역개발	4,594,631	22.39	4,594,631	24.11	0
	기 타	165,542	0.81	165,542	0.87	0

5. 채무부담 행위조서 : 해당없음

6. 계속비 사업조서 : 별 첨

7. 명시이월 사업조서 : 별 첨

8.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계	국비	균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계	국비	균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계	국비	균특	기금	분권	도비	군비
합계	164,103,167	55,258,080	18,920,578	4,669,766	2,276,540	31,667,733	51,310,470	164,775,657	58,354,388	18,139,467	4,207,654	2,276,540	30,849,761	50,947,847	△672,490	△3,096,308	781,111	462,112	0	817,972	362,623
기획감사실	1,393,840			1,336,608		40,039	17,193	1,466,506			1,336,608		59,839	70,059	△72,666	0	0	0	0	△19,800	△52,866
주민생활과	38,985,090	21,471,308	7,000	173,063	1,844,019	7,280,234	8,209,466	41,885,633	23,294,567	7,000	173,063	1,844,019	7,711,686	8,855,298	△2,900,543	△1,823,259	0	0	0	△431,452	△645,832
행정과	684,074	124,091	10,000			169,425	380,558	674,074	124,091				169,425	380,558	10,000	0	10,000	0	0	0	0
재무과	58,620					32,800	25,820	58,620					32,800	25,820	0	0	0	0	0	0	0
종합민원실	793,141	158,916				194,200	440,025	793,141	158,916				194,200	440,025	0	0	0	0	0	0	0
문화관광과	9,565,216	1,691,054	2,100,000	1,125,659	91,404	1,553,996	3,003,103	9,650,486	1,683,054	2,100,000	1,117,524	91,404	1,524,811	3,133,693	△85,270	8,000	0	8,135	0	29,185	△130,590
지역경제과	7,678,304	1,789,927	1,000,000		80,147	1,002,263	3,805,967	6,632,196	2,022,329	1,000,000		80,147	737,908	2,791,812	1,046,108	△232,402	0	0	0	264,355	1,014,155
환경과	1,295,823	605,157		50,000		293,147	347,519	1,295,823	605,157		50,000		38951	601,715	0	0	0	0	0	254,196	△254,196
녹지공원과	8,980,871	3,765,892	675,280			1,514,000	3,025,699	8,973,431	3,758,452	675,280			1,429,157	3,110,542	7,440	7,440	0	0	0	84,843	△84,843
해양수산과	9,125,819	2,105,625	1,469,000	523,660	83,090	2,032,880	2,911,564	9,505,909	2,585,625	1,469,000		83,090	2,456,630	2,911,564	△380,090	△480,000	0	523,660	0	△423,750	0
건설재난과	25,128,822	2,700,933	6,720,296		21,075	7,736,222	7,950,296	25,286,323	2,865,879	6,548,000		21,075	7,059,179	8,792,190	△157,501	△164,946	172,296	0	0	677,043	△841,894
도시개발과	7,793,285		1,164,000			2,374,500	4,254,785	7,793,285		1,164,000			2,374,500	4,254,785	0	0	0	0	0	0	0
보건소	1,978,341	454,804		527,479	5,279	357,710	633,069	2,017,064	454,334		517,510	5,279	356,557	683,384	△38,723	470	0	9,969	0	1,153	△50,315
농업정책과	2,114,357	350,975	1,250	6,720	103,211	402,875	1,249,326	2,074,718	341,336	1,250	6,720	103,211	372,875	1,249,326	39,639	9,639	0	0	0	30,000	0
농업지원과	12,087,375	6,377,205	33,000	18,530	30,495	2,361,785	3,266,360	10,971,251	6,763,420	33,000		30,495	1,605,781	2,538,555	1,116,124	△386,215	0	18,530	0	756,004	727,805
농축산과	4,746,665	631,193	499,000	427,047	10,500	1,017,271	2,161,654	4,803,243	666,228	499,000	425,229	10,500	1,021,076	2,181,210	△56,578	△35,035	0	1,818	0	△3,805	△19,556
관광지사업소	9,522,230		2,970,000	400,000		1,579,386	4,572,844	9,729,649		2,970,000	500,000		1,670,886	4,588,763	△207,419	0	0	△100,000	0	△91,500	△15,919
상하수도사업소	22,171,294	13,031,000	2,271,752	81,000	7,320	1,725,000	5,055,222	21,164,305	13,031,000	1,672,937	81,000	7,320	2,033,500	4,338,548	1,006,989	0	598,815	0	0	△308,500	716,674

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세 입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합 계	84,316,325	81,357,269	2,959,056	67,711,598	66,246,338	1,465,260	16,604,727	15,110,931	1,493,796
지역경제과	6,312,613	6,317,824	△5,211	3,932,737	3,900,784	31,953	2,379,876	2,417,040	△37,164
환경과	1,516,141	1,141,945	374,196	1,516,141	1,141,945	374,196			0
녹지공원과	5,981,372	5,889,089	92,283	5,981,372	5,889,089	92,283			0
해양수산과	6,236,935	6,543,985	△307,050	6,236,935	6,543,985	△307,050			0
건설재난과	17,258,236	16,673,843	584,393	17,258,236	16,673,843	584,393			0
도시개발과	6,414,094	6,414,094	0	3,538,500	3,538,500	0	2,875,594	2,875,594	0
특구지원과	0	0	0			0			0
농업정책과	3,614,811	2,035,978	1,578,833	790,054	742,181	47,873	2,824,757	1,293,797	1,530,960
농업지원과	8,793,020	8,404,701	388,319	8,793,020	8,404,701	388,319			0
농축산과	2,576,011	2,613,033	△37,022	2,576,011	2,613,033	△37,022			0
상하수도사업소	25,613,092	25,322,777	290,315	17,088,592	16,798,277	290,315	8,524,500	8,524,500	0

○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2009.예산안	기정액	증 감
합 계	172,114,237	163,204,304	8,909,933	155,509,510	148,093,373	7,416,137	16,604,727	15,110,931	1,493,796
지역경제과	12,590,067	12,044,953	545,114	10,210,191	9,627,913	582,278	2,379,876	2,417,040	△37,164
환경과	5,485,456	6,043,208	△557,752	5,485,456	6,043,208	△557,752			0
녹지공원과	13,482,911	13,572,635	△89,724	13,482,911	13,572,635	△89,724			0
해양수산과	10,172,363	10,470,095	△297,732	10,172,363	10,470,095	△297,732			0
건설재난과	45,168,478	41,716,654	3,451,824	45,168,478	41,716,654	3,451,824			0
도시개발과	16,186,497	16,210,304	△23,807	13,310,903	13,334,710	△23,807	2,875,594	2,875,594	0
특구지원과	777,597	678,171	99,426	777,597	678,171	99,426			0
농업정책과	9,381,026	6,437,637	2,943,389	6,556,269	5,143,840	1,412,429	2,824,757	1,293,797	1,530,960
농업지원과	15,723,168	13,640,412	2,082,756	15,723,168	13,640,412	2,082,756			0
농축산과	7,321,006	7,532,114	△211,108	7,321,006	7,532,114	△211,108			0
상하수도사업소	35,825,668	34,858,121	967,547	27,301,168	26,333,621	967,547	8,524,500	8,524,500	0

10.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안번호 제1,195호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8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 총규모는 3,142억 8,51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1,8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0.9% 정도입니다.
 - 일반회계는 13억 4,977만 7천원이 증가된 2,937억 5,982만 8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4억 6,845만 2천원이 증가된 205억 2,52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보다 29억 5,905만 6천원이 증가된 843억 1,632만 5천원입니다.
 - 그 중 일반회계가 677억 1,159만 8천원이고
 - 특별회계가 166억 472만 7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2009년 기정예산보다 89억 993만 3천원이 증가된 1,721억 1,423만 7천원입니다.
 - 그 중 일반회계가 1,555억 951만원이고
 - 특별회계가 166억 472만 7천원입니다.
-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사항을 보면

《지역경제과》

p.233

- 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8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여, 시설비 20억 8천만원 중 15억 6,118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235

- 도비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을 위한 시설비 3,4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1,76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과》

p.248

-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20만원 전액을 삭감한 부분과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251

- 매립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매립장주변 지역 주민복지기금 3억 6,000만원 감액과 관련, 추가 민원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7. 16 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용역결과와 재해피해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678만 4천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p.252

-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위탁금,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600만원 전액 감액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

p.259

- 숲가꾸기사업 1,818ha에 대한 시설비 3,180만 9천원 증액과 관련, 년도 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261~262

-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7.16호우피해 복구공사 시설비 중 균비 8,484만 3천원을 감액해도 복구는 이상 없이 완료되는 것인지, 산림지리정보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수자원보호 해제구역 산지구분도 정비 1식과 채석 및 복구지원관리 1개소에 대한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수산과》

p.268

- '09년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중 도비 2억 4,175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19억 3,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p.269

- 대구수정란 방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천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해파리 제거 민간경상보조비, 366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80(수정예산안 설명서)

- 맥전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비 1억 8,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재난과》

p.280~281

-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21억 1천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사유,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 전체 시설비 12억 2,800만원 중 2억 1,359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유, 재정건의사업으로 당동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283

-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7,122만 3천원 명시이월 하는 부분과 산복소류지 확장개발사업 시설비 5억원 증액하여 1억 9,78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284

- 마을안길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증액, 포교마을 진입로정비공사 시설비 3억원 증액,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연결도로사업 시설비 1억원 편성, 재정 건의사업으로 곡용마을 안길정비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한 년도 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p.285

- 송산~도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군도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군비 10억원 증액하고 20억 8,12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시설비 26억 8,740만원 중 7억 2,046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p.83(수정예산안 설명서)

- 하천피해복구(세부사업변경) 시설비 1억 168만 4천원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과》

p.289

- 도시개발과는 도비지원 축소 등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중 군비 2,380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구지원과》

p.293~294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면서 4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과 일반운영비 중 여비를 2백만원 증액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46만 8천원을 감액시키는데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과》

p.299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중 873만 9천원을 증액하여 2,995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p.300

-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9,750만원 중 6,210만원을 과다하게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한 설명

《농업지원과》

p.308~309

- 생명환경농업모델 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자산취득비 8억 2,834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고 군비 12억 9,406만원을 증액하여 일본산 포트이양기 등을 구입하려는 계획 및 현재까지의 포트 이양기 구입실태, 향후 지원사업 수요 및 예상되는 전체 소요 예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18억 4,845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p.311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4억 8,584만 6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p.318

- 고성군축산인연합회 한마당행사, 사회단체보조금 3백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청광퇴비 제조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323

-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점검 사업(70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p.330

-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2개소에 대한 시설비 11억 9,763만원을 증액하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19억 6,065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는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p.332~333

-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중 임포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비를 405만 7천원을 증액하고 1억 1,82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부분과 삼봉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관계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로 타당한지,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질의 및 답변

《지역경제과》

- 문 : 운수업체보조금 예산이 삭감되어도 군민들의 벽지노선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 답 : 국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문제없습니다.
- 문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소진시켜야 하는 예산 아닌지?
- 답 : 당해연도 소진되어야 하나, 명시이월에 나오는 스텝 지붕개량사업 1,765만원은 보조금이 12월 5일 내려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

《환 경 과》

- 문 : 고성군 오염 총량 실태 모니터링 용역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답 : 그래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 문 : 남포마을이 남았는데 주민복지기금을 삭감하는 사유는?
- 답 : 고성군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2억원을 주고 매년 5천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 조건이 안되면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남포마을은 9억원이나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문 : 너무 과도한 요구는 행정이 들을 필요가 없고 적정선에서 사업비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을에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예
- 문 : 민간위탁금 불법투기쓰레기 위탁처리, 좋은 계획인데 삭감 사유는?
- 답 : 불법산업폐기물이 없고 생활폐기물은 판곡매립장으로 가면 됩니다.
- 문 : 단속이 미비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지?
- 답 : 전 고성군을 다 뒤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신고, 출장의 경우에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문 : 폐기물 재해 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678만 4천원 명시이월 사유는?
- 답 : 11월말 조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녹지공원과》

- 문 : 예산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우리 지역의 산에 아카시아, 오리나무는 옛날에 산이 황폐화 되었을 때 외래종을 심은 것으로, 이제는 주위 나무를 고사시키는 수종으로 되었으므로 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답 : 지적 하신대로 아카시아, 오리나무는 50년대, 60년대 심은 비료목으로 전 지역을 한꺼번에 벌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벌채된 부분에 편백, 조경수 조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 문 : 2009년도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이월 사유는?
- 답 : 금년에 사실 동해와 거류지역 어업보상 용역이 끝나지 않았으며, 신청 건수가 없어서, 신청이 미달된 것임.
- 문 : 삼호, 삼강, 혁신에서 동해면 피해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진행사항을 보아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수용이 안되는 것 아닌지? 사업비는 충분한지?
- 답 : 어업구조 조정을 위해 새로 예산확보 내시된 것은 없지만, 기존 25억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 문 :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비 삭감 사유는?
- 답 : 올해 처음 대구 호망 허가가 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으므로 1월 실시할 예정임.
- 문 : 어민들의 수익이 되므로 수정란 방류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람.
- 답 : 예

《건설재난과》

- 문 : 소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 도로비 3억원 편성했는데 연내 집행 가능한지?
- 답 :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주로 설계비가 많습니다.
- 문 : 건설과 사업비가 많다보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사업비 과다 이월로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집행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답 : 예
- 문 : 삼복소류지 확장 개발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만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5억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답 : 예, 알겠습니다.

- 문 :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임차료 6백만원이면 내년에는 얼마나 될 것인지?
- 답 :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 문 : 공익근무 요원들 보상비 삭감 사유는?
- 답 : 종전에는 행정보조 요원들 이었지만 요즘은 사회복지분야 공익요원들로 우리군은 교통비만 주고 병무청에서 봉급, 식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 문 : 영생타워에서 교사리까지 도로 개설이 시급한데, 향후 계획은?
- 답 : 보상을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복합형 신도시와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임.
- 문 :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 실시설계 등 모든 절차를 할 의지가 정확하면 그렇게 하시고 의지가 약하다면, 고성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답 :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 수남쪽에서 삼산면 쪽으로의 쓰레기매립장 도로계획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 사유는? 조속 추진해야 할 것임.
- 답 : 수변공원 조성시기와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음.

《특구지원과》

- 문 :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1억원이 노벨CC입니까?
- 답 : 예
- 문 :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 확보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또 추경에 사업비를 더 증액하면 어떡합니까? 회사와 고성군의 입장은 다르지 않은지?
- 답 : 당초 도로의 길이가 430mm로 사업비가 1억원 모자라서 회사측이 1억원을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해 어차피 우리 군도로 기부채납 될 도로이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정책과》

- 문 : 농산물택배비 지원을 6,200만원 하는데 60% 이상 과다 계상한 것은 수요를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기 바람.
- 답 :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 문 :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8억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조정하고 군비 12억 9천만원을 증액하며, 왜 일본산 포트 이양기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향후 어느 정도 구입할 것이며,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답 : 아직 국내산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일본산을 구입하고 있으며, 국산 이양기를 두고 일본산 이양기를 구입한다는데 대해서 관행적인 이양기를 사용하면 벼 물바구미를 약제를 사용해서 방제해야 하고 벼의 빠른 착근과 생육상태 양호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11개 단지에 보급했고 당초예산에 군비 확보가 충분치 못하여 이월사업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계구입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문 : 생명환경농업이 일본에서 생산된 농기계로 해야만 생명환경이 농업이 아니며, 다만 착근이나 바람이 잘 통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맞지요?
- 답 : 예, 그것은 아닌데 용이 합니다.
- 문 : 행정감사 때 센터소장이 일본산 포트기 이양기가 국내산보다 30% 증수가 사실인지? 조금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답 : 단지 기계만 가지고 그렇게 논하기는 어렵고 초기 생육이나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었을 경우 되는데, 기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 : 생명환경모델 육성지원사업비가 29억 7천원으로 11억 2,534만 3천원 지출하고 18억원이 남았다는 것인지?
- 답 : 예
- 문 : 생명농업 하는데 농기계를 30억원 어치 사줬다고 하면 관행농업이나 하는 사람들이나 군민들 입장에서 뭐라 하겠는지? 농기계 관리주체에 대하여도 총체적으로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할 것임.
- 답 : 올 연초 4개 농협에 관리하라고 하니 농협은 자기자본 부담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대여은행을 해서 몇 대는 행정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하고 그 외는 생명농업단지에 민간보조로 나갔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군비 확보는 생명환경농업단지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해 과목을 조정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문 :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경할 때마다 목을 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답 : 실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문 : 농기계 구입일자 및 품목, 가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연도별 구분 작성하여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하기 바람.

● 답 : 예

《농축산과》

○ 문 :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청광퇴비 제조시설 사업비 4,500만원 삭감은 적절치 않으며, 부지도 크게 할 필요가 있고 엇그제 뉴스에서 보니까 축분을 말려서 연탄모양으로 태우는 기술이 개발되었던데 축산폐수 자원화에 대한 선진기술을 벤치마킹을 하던지 민간자본이라도 유치하여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필요한 일임.

● 답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문 : 청광퇴비제조시설 소유가 군수로 되어 있다보니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앞으로 권역별 공공처리장 소유를 작목반이나 개인농가로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답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문 : 결산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이월하고 있는데, 회계 연도 내 사업할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예산 확보하기 바람.

● 답 : 알겠습니다.

12. 토 론 : 없음

13. 심사결과

○ 2009. 12. 22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